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8. 12. 13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: 2018년 11월 13일

나. 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18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: 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
제10차 행정위원회(2018. 12. 1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보건소장 엄혜숙)

가. 제안이유

-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범위 확대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금연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맞도록 금연구역 지정범위 신설과 정비를 통해 보건행정의 신뢰도를 향상 시키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신설함(안 제5조)
 - 버스정류소(마을버스정류소를 포함한다)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m 이내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에 따른 전통시장
- 공개공지 및 사유지(연면적 5,000 m^2 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)
-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(안 제11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광목)

- 본 개정조례안은,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임
- 주요내용으로는,
 - 안 제5조에서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전통시장, 공개공지 및 연면적 5,000 m^2 이상의 대형건축물의 대지 등으로 확대 지정하였으며,
 - 안 제11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- 검토 결과, 본 개정조례안은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서 위임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함으로써,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통행하는 일정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나,
 - 금연구역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민홍보와 동시에 지속적인 문제점 파악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,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59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18. 11.
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일부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, 구민들의 금연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부합하고 보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금연구역 지정 신설(안 제5조)

- 1) 버스정류소(마을버스정류소 포함)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m 이내
- 2) 전통시장
- 3) 공개공지 및 연면적 5,000㎡이상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

나.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
(안 제11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국민건강증진법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: 규제심사·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원안동의
라. 입법예고(2018. 10. 18. ~ 11. 7. / 20일간) 결과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구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(마을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)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m 이내

제5조제1항제8호를 제10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에 따른 전통시장

9. 「건축법」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(연면적 5,000㎡이상)이 속한 대지. 단,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1일(4시간 이상 근무)당 4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야간, 새벽,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 1일당 최대 6만원까지”를 “활동수당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 1. 2. (생략) 3. <u>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</u> 4. ~ 7. (생략) <u>〈신설〉</u> <u>〈신설〉</u> 8. (생략) ② ~ ④ (생략) 제11조(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)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<u>1일(4시간 이상 근무)당 4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야간, 새벽, 휴일 등에 활동</u>	제5조(금연구역의 지정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<u>구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(마을 버스 정류소를 포함한다)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m 이내</u> 4. ~ 7. (현행과 같음) 8. <u>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에 따른 전통시장</u> 9. <u>「건축법」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(연면적 5,000㎡이상)이 속한 대지. 단,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u> 10. (현행 제8호와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11조(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) ① ----- ----- <u>활동수당을</u> ----- ----- -----.

하는 경우 1일당 최대 6만원까지
지급할 수 있다.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